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경우

Q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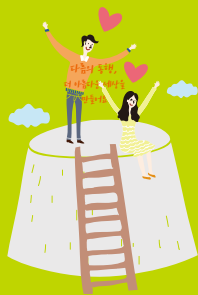
A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짐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위험할 땐 119
원격응답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 심사제도 안내

(장애정도 판정 관련 민원상담)

국민연금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관련 문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보다 나은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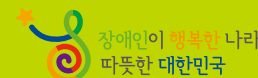
'20.1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월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전 1급, 2급, 3급 중복지)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20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급여액(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최대 30만원)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단위 : 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 만 64세	만 65세 이상	만 18세~ 만 64세	만 18세~ 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380,000	380,000	300,000	80,000	380,000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70,000	70,000	300,00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274,760	40,000	254,760	20,000	40,000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전3~6급)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증 (중전 1급, 2급, 3급 중복지)	200,000원	150,000원	70,000원
	경증 (중전 3~6급)	100,000원	100,000원	20,000원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여조건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3.0%,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목적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로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2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3 신청

- 방 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4 심사

- 자산조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5 결과통보

-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6 지급

- 매월 20일 연금지급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